



Dongguk University Since 1906
Creative Thinkers, Young Challenger, Ethical Leader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서울)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 일반 재외국민
- ▣ 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
- ▣ 새터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모집요강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변경된 모집요강을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목 차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02 p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3 p
지원자격	05 p
전형일정	06 p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07 p
최소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08 p
자격인정 공통사항	09 p
재학기간 인정기준	12 p
제출서류	14 p
지원자 유의사항	17 p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19 p
합격자 사정원칙	21 p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22 p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등록포기 및 환불 / 합격취소	23 p
장학제도	26 p
학력조회 동의서	27 p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28 p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29 p

❁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 고
		인문계/ 영화영상	자연계	합 계	
일반 재외국민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33명	21명	54명	모집단위별 선발, 신입생 입학정원의 2% 이내 (정원외 모집)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		49명	31명	-	모집단위별로 최대모집 가능인원 (정원외 모집)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47명	33명	-	

※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 일반 재외국민 / 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 / 새터민 모두 계열에 따른 동일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계열구분	전형구분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서류심사	비 고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영화영상학과	1단계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국어 50% + 영어 50%	-	5배수 선발
		자연계열	수학 50% + 영어 50%	-	
	2단계	-		P/F	

3. 전형절차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영화영상학과 공통



4. 원서접수

- ▶ 접수 기간 : 2021. 7. 5.(월) 10:00 ~ 7. 7.(수) 17:00
- ▶ 접수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 학	모 집 단 위	계 열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일반 재외국민	12년해외전교 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불 교	불교학부 	인 문	-	1	1
	문화재학과 ★		1	2	2
문 과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인 문	2	2	2
	영어영문학부		2	3	3
	일본학과		1	2	2
	중어중문학과 		2	5	5
	철학과 		-	1	1
	사학과 		1	2	2
	수학과 		1	2	2
이 과	화학고 	자 연	1	2	2
	통계학과		1	2	2
	물리 · 반도체과학부		1	1	1
	물리학  , 반도체과학		1	1	1
법 과	법학과 	인 문	2	3	3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인 문	2	2	2
	정치행정학부		2	2	2
	행정학		-	1	1
	북한학		1	2	2
	경제학과		2	3	3
	국제통상학과		-	1	1
	사회 · 언론정보학부		2	3	3
	사회학		-	1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	3	3
	식품산업관리학과		-	1	1
경찰사법	광고홍보학과	인 문	2	2	3
	사회복지학과		-	1	1
	경찰행정학부		3	3	-
	경찰학, 산업보안, 범죄과학, 교정학		3	3	3
경 영	경영학과	인 문	1	1	1
	회계학과		1	1	1
	경영정보학과		-	1	1
바이오 시스템	생명과학교 	자 연	-	1	1
	바이오환경과학과		-	1	1
	의생명공학과		1	1	2
	식품생명공학과		1	1	1
공 과	전자전기공학부	자 연	3	3	3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3	3	3
	컴퓨터공학		1	1	2
	정보통신공학		-	1	1
	건설환경공학과		2	2	2
	화공생물공학과		2	2	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	1	1
	건축공학부		1	2	2
	건축공학, 건축학		-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1	2	2
	멀티미디어공학과		-	1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	1	1
사 범	국어교육과	인 문	1	-	-
	수학교육과	자 연	1	-	-
예 술	영화영상학과 	예체능	2	2	2
AI융합학부 ★			1	3	3
계			54	-	-

※ 「★」 2021.03.기준 신설학과(학부)이며, AI융합학부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학부임

※ 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새터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은 없으나, <최대모집 가능인원>까지만 선발함

모집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교직** 표시된 학과(전공)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의 경우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므로, 2학년 중 교직신청은 가능하나 졸업시점에 교직과정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공으로 졸업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행정학부, AI융합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고,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결정함
- 3) 불교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되, 타 학과로 전과는 불가(복수전공은 가능)
- 4)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 공간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 임용자격을 참고할 것
- 5)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서울 본교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고양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 6)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와 신입생은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소속되며, 학과별 심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7)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 대학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할 것
- 8)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나 실기평가를 하지 않고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 방법

- 각 모집구분의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충원합니다. 다만, 「일반 재외국민」의 충원합격자 모집단위별 최대인원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다른 모집단위에서 건제순에 따라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모집단위로부터 충원기회를 제공받은 모집단위인 경우는 충원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다음 순서의 모집단위에서 충원합니다.
- 2) 1번 기준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에서 건제순에 따라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3) 1번, 2번 기준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에서 건제순에 따라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건제순에 따라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지원자격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집구분		세부 자격구분	자격 요건
일반 재외 국민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근무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하는 자로 재직/ 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 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 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 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 년 이상 수료한 자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해외 선교사의 자녀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영주권 취득 외국 교포 자녀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우리나라 초·중고(6-3-3)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 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검정고시 지원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예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외국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세 부 사 항
원서접수	2021. 7. 5.(월) 10:00 ~ 7. 7.(수) 17:00	▷ 인터넷 원서접수 ▷ 원서접수 단계에서 아래 서류를 사전준비 ▶ 일반 재외국민은 <u>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 각각 PDF 업로드</u> ▶ 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는 <u>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PDF 업로드</u>
필답고사장 안내	2021. 7. 13.(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필답고사	2021. 7. 18.(일), 오전 09:30까지 입실	▷ 고사시간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 10:00~11:20(80분) ▶ 자연계열 : 10:00~11:40(100분) ▷ 고사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고사실, 고사시간, 유의사항 등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확인
1단계 합격자발표	2021. 7. 22.(목)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서류제출	2021. 7. 23.(금) ~ 7. 27.(화)	▷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우편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출 불가) ▶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하며, 우리대학 입학실로 우편제출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1. 7. 29.(목)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최초합격자 발표	2021. 8. 26.(목) 예정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1. 12. 17.(금) ~ 12. 20.(월) 21:00	▷ 우리대학 지정은행(영업시간 내) 가상계좌 또는 은행창구 납부 ▷ 등록예치금 : 300,000원
충원합격자 발표	2021. 12. 21.(화) ~ 2021. 12. 27.(월) 21:00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또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1. 12. 28.(화) 16:00 까지	▷ 우리대학 지정은행(영업시간 내) 가상계좌 또는 은행창구 납부 ▷ 등록예치금 : 300,000원
잔여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16:00	납부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예정

✧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1. 필답고사 범위

구 분	과 목	형식 및 범위	
인문계열 · 영화영상학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등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교과서 및 EBS교재를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자연계열	수학	수능 수학, 수학1, 수학2 범위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공통	영어	수능 영어 범위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2. 필답고사 과목 및 문제유형

계 열	과 목	시 간	문항 수	문항 유형	문항 배점
인문계열 · 영화영상학과	국어 + 영어	80분 (휴식시간 없음)	국어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4지선다형 객관식	각 문항별 1~3점
자연계열	수학 + 영어	100분 (휴식시간 없음)	수학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3. 서류심사 안내

- ▶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요청
- ▶ 서류심사는 지원자격의 적격여부만 판단

❁ 최소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 ▶ 해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외국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체류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모집구분	학 생		해외근무자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기간	해외근무기간	해외체류기간
일반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3년 이상 (고교 1개년 포함)	해외재학기간 중 1개년마다 3/4 이상	역년으로 3년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	해외재학기간 중 1개년마다 2/3 이상 (배우자 포함)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학년제별 상이 (13p 참조)	전 이수기간 체류 (방학, 휴일 제외)	-	-
새터민	제한 없음		-	-

- 위 기간은 해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새터민은 학생의 기간 및 자격으로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자격인정 공통사항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불인정)
- 3) 보호자(부모)의 외국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부모) 근무국의 전쟁, 천재 또는 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근 국가에서 수학하고 「제3국 수학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자녀의 제3국 수학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4)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단, 새터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5)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1)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
 - ▶ 보호자(부모)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합니다.
 - ▶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중첩)기간이 3년(1,095일)이 안되는 경우에도 해외 근무기간이 만 3년을 충족하고,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기간 내에 학생이 6개 학기(고교 1개년 과정 포함)를 온전히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단, 체류일수의 부족분은 불인정)
-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3)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복/누락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3개 학기
외국 학교								누락									누락					누락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기 중복/누락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2개 학기
외국 학교							누락	누락									누락				누락				

※ 중복학기 G2-1~G2-2중 한 개 학기만 G4-1~G4-2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5)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6)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인정 기준시점

1)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 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비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필답고사에 합격하여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 ▶ 단, 보호자(부모)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학사일정이 지체되어 졸업예정일이 2022년 3월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졸업예정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보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합격으로 합니다.

2)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외국고등학교 재학·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4. 기타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부모)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발생 시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내부 서류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국가 학제 및 총 수학기간

국가명	학제			총 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중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미 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호 주	1-6학년	7-10학년	11-12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8학년)	1-4학년 (9-12학년)		10년 (12년)
말레이시아	1-6학년	7-11학년(초급 3년, 상급 2년)		11년
영 국	1-6학년	7-13학년		13년
뉴질랜드	1-7학년	8-10학년	11-13학년	13년

※ 필리핀의 경우 2018년 졸업자부터 12학년제 졸업자로 인정

※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 13년 이상 학제인 외국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12년 학제인 외국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12년 미만 학제인 외국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23개학기
	외국학교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B	국내학교																										13학년제→ 12학년제	
	외국학교 (13학년제)																										혼합이수	
	외국학교 (12학년제)																										13학년제 1년 하향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C	국내학교																									23개학기 미달
	외국학교																									
D	국내학교																									고교 1개 학년미달
	외국학교																									
E	국내학교																									11년제
	외국학교																									

2.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외국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함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 ▶ 외국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1개 국가 내 학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혼합 이수한 경우 포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2학년까지만 이수한 경우 : 10~12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다만,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차 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1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수료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월반 또는 조기졸업 관련 사유서를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기타

-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1. 재외국민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제출시 아래 해당 서류 순으로 정리하여 우편제출할 것)

번호	구 분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 과정 이수자	비 고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영주 교포의 자녀		
		공 무 원	상 사 직 원	외국 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정부 유치 과학자 /교수 요원	현지 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 업자	교육 출장 목적 체류자	해외 선교사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학생부)	○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 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6	중학교 성적증명서 (학생부)	○	○	○	○	○	○	○	○	○	○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생부)	○	○	○	○	○	○	○	○	○	○	
8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외국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 추천서			○	○							
11	외국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			
12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13	사업자등록증(해당국) 사본						○					사업기간 명기
14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이상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세금납 입증명서 제출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이상
17	영주권 사본 (학생·부·모)									○		영주권 취득일 반드시 명기
18	여권 사본 (학생·부·모)	○	○	○	○	○	○	○	○	○	학생만	국적 및 사진있는 부분 복사
19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부·모)	○	○	○	○	○	○	○	○	○	학생만	해당서류의 스캔본(PDF)을 원서접수시에도 업로드 제출
20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학생·부·모)	○	○	○	○	○	○	○	○	○	학생만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2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학생·부·모)	○	○	○	○	○	○	○	○	○	학생만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22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23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24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 처에서 공증한 원본	
25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2. 새터민 제출서류 목록

- ▶ 입학원서 1부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 학력증명서 (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 고교졸업(예정)증명서 (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새터민 대학교육 지원안내

가. 지원 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및 시행지침
- ▶ 관련 법령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 ▶ 학력인정 근거 법령은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92조·제9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 ▶ 아래 1), 2) 대상자가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합격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합격 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 2)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 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1단계 전형 합격자만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이전에 제출한 서류는 분실염려가 있으므로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2)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출이 불가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추후 최종합격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서류의 미제출 또는 사본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3) 근무·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4)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5)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 7)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9)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1)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 · 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혹은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30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바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처

-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 ▶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4. 서류제출 절차

No	구 분	내 용
1	제출대상	▶ 대상자 :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 전원
2	제출기간	▶ 2021. 7. 23.(금) ~ 7. 27.(화)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3	제출처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입학실
4	제출서류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학원서」와 「서류심사지원서」 출력 ▶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격관련 서류」 구비 - 재외국민 제출서류 목록(p.14)의 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 ▶ 「입학원서」, 「서류심사지원서(소정서식)」, 「모든 자격관련 서류」 구비 제출
5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출 불가)
6	제출서류 도착확인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 2021. 7. 29.(목) 공지 예정

☀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1) 수시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 ▶ 지원횟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산정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우리대학 복수지원 허용 : 최대 5회 지원 가능(재외국민 포함 시 최대 6회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
Do Dream Do Dream(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불교추천인재 고른기회통합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인재	논술	실기
1회	1회	1회	1회	1회

2) 이중등록

-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최종적으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3) 합격취소

-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전형 및 등록 유의사항

- 1) 모든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답고사 미응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3)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 4)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5) 최종합격자 중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가 2022년 3월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6) 최종합격자 중 외국고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2022. 2. 25.(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7) 합격(충원합격 포함)을 통보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8) 필답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미 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고사 시작시간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9)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10) 필답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직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응시방법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신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수시(재외국민 특별전형)모집 충원합격

- 1) 수시(재외국민 특별전형)모집 미등록 인원은 수시 충원합격기간에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4. 온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1)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성적 및 합격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또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에 지원하는 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를 입학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안내를 위한 메일/SMS 발송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 호라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부정행위자 처리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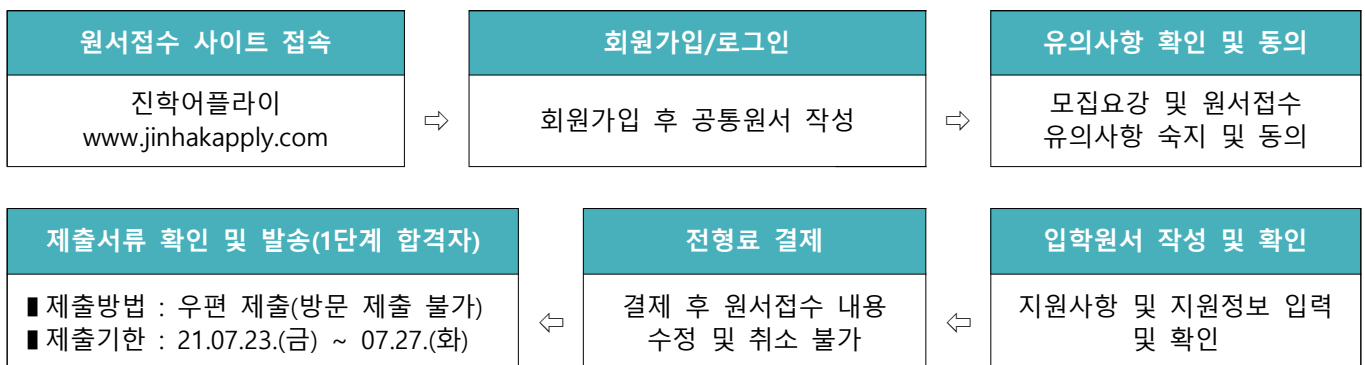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기재누락, 허위,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대학에 지원(응시)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를 통해 우리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입학(지원)을 취소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전형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3) 우리대학 및 타 대학에서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1. 주요사항

구분		내용				
원서 접수	접수기간	■ 21.07.05.(월) 10:00 ~ 07.07.(수) 17:00				
	접수방법	■ 온라인 원서접수(별도 방문접수 없음)				
	접 수 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복수지원 허용	■ 최대 5회 지원 가능(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시 최대 6회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
Do Dream Do Dream(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불교추천인재 고른기회통합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인재	논술	실기	
1회	1회	1회	1회	1회		
문의	■ 진학어플라이 : 1544-7715 ■ 동국대학교 입학처 : 02-2260-8861					
서류 제출	제출방법	[일반 재외국민/12년 해외전교육과정 이수자/새터민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 한함] ■ 우편제출 (제출서류 목록은 14~15p 참조) ■ 원서 접수 ⇒ 『우편발송용 봉투 라벨지』 출력 ⇒ 대봉투에 부착하여 발송 ■ 유의사항 : 방문제출 절대 불가				
	제출기간	■ 21.07.23.(금) 10:00 ~ 07.27.(화) ※ 21.07.27.(화) 소인까지 유효				
	도착 확인	■ 21.07.29.(목) 예정 ■ 확인 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2.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며**,
 ※ 원서접수 마감 일시 : 21.07.07.(수) 17시 정각(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이전에 원서작성을 완료(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한 지원자에 한하여 17시 15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 ② **접수(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는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③ 지원자 인적사항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④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과오납,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⑤ 원서접수 시 사진을 등록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 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 ⑥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⑦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등기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방문제출 절대불가). 서류제출 시에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편발송용 봉투 라벨지』를 출력하여 봉투겉면에 부착한 후, 출력한 “입학원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송부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주소 :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1층 입학처 재외국민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제출기한 : 원서접수 이후 ~ 21.07.27.(수) 우편소인까지 유효

- ⑧ 「서류심사 지원서」의 출력과 원활한 학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교명과 재학기간, 외국학교 관련사항(E-mail, 전화번호, FAX)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⑨ 특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뒤 일곱 자리는 남자의 경우 “5000000”, 여자의 경우 “6000000”을 입력하기 바랍니다.
- ⑩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의 도착여부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21.07.29.(목) 예정)에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기일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우리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

▶ 동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실 (☎ 02-2260-8861)

※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마감 시한 내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접수마감 시한까지 우리대학 입학처로 연락한 자에 한하여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PC 문제로 인한 미접수자는 제외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접수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외국인 지원자 유의사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우리대학 글로벌입학팀** (☎ 02-2260-3438)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 합격자 사정원칙

1. 모집단위별로 1단계 필답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5배수 선발하고, 최종단계에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열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① 국어 필답고사 성적 상위자 ② 국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자연계열	① 수학 필답고사 성적 상위자 ② 수학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자연계열의 1단계 성적 동점자는 2단계 서류심사 대상자로 모두 선발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답고사 미응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 ▶ 1단계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 시 원서접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모집구분	모집단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일반 재외국민	인문·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	90,000원	50,000원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 새터민			10,000원

2. 전형료 환불 및 금액

- 전형료 환불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과오납,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에 불합격하더라도, 반환되는 전형료는 없습니다.
-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으로 인한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 또는 지변 전형일자자의 사후 변경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질병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필답고사 불참 : 55,000원	▶ 환불신청서(소정서식)와 병원장 발행 진료 또는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환불신청기간 : 필답고사일로부터 5일 이내 17:00까지
접수취소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수시 최대 6회 복수지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과오납	해당 금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환불 신청한 건에 한함

3. 전형료 지출잔액 발생 시 환불 안내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발생 시, 전형료 잔액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우리대학 직접 방문 수령
- 단,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전산망 이용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등록포기 및 환불 / 합격취소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구 분	발표 일정	발표 방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7. 22.(목) 예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고,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최초합격자 발표	2021. 8. 26.(목) 예정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 21.12.17.(금) ~ 12.20.(월) 16:00 ■ 등록예치금액 : 300,000원
잔여등록금 납부	■ 22.02.09.(수) ~ 02.11.(금) 16:00 ■ 잔여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홈페이지 안내
유의사항	■ 납부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또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충원합격자 발표

모집구분	일정	방법
일반 재외국민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 새터민	21.12.21.(화) ~ 12.27.(월) 21:00 ※ 세부일정 홈페이지 안내	■ 1차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 ■ 2차 ~ 최종 : 개별통보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충원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 충원합격자 등록은 합격 통보 시 등록기간 및 방법 안내 예정 ■ 최종충원합격자 등록 마감일시 : 21.12.28.(화) 16:00 ■ 등록예치금액 : 300,000원
잔여등록금 납부	■ 22.02.09.(수) ~ 02.11.(금) 16:00 ■ 잔여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홈페이지 안내
유의사항	■ 납부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또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3. 유의사항

- 2차~최종 충원합격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도 충원합격 통보 및 등록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에도 등록금을 납부(인터넷 및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ATM 무통장입금 등)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등록금 납부방법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예비합격순위자 중 충원발표기간 **연락 두절로 충원합격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지원자는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예비합격순위자는 충원합격 통보 종료일인 21.12.27.(월) 21:00까지 여행을 자제하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가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분	세부사항
대상	■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자 ※ 등록포기 시 이를 취소하거나 반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2.02.18(목) 16:00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한에 따라 상이함(신청기한에 따른 신청방법 추후 홈페이지 안내) ① 온라인 신청(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 수험생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② 입학처 유성통보 후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시 제출 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 지원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각 1부, 통장사본

합격취소 /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1. 합격취소

- ▶ 우리대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의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합격취소 대상자 및 내용

- 조건부 합격자(지원자격의 「자격인정 세부기준」의 용어 정의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 조건부 합격자 중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원서접수 시간 순으로 수시 6회를 초과하여 원서접수한 자
- 전형 종료 후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 적발된 자
-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
-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자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 최종합격 처리 :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관리실로 제출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충족 시 합격 처리

장학제도

장학제도는 추후 모집요강에 변경 공지 예정입니다.

❁ 학력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본인의 학적과 성적을 조회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Name : (_____)

School Address : (_____)

School E-mail Address : (_____)

School TEL : (_____), FAX :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

Student Full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admiss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graduat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I am the above person who is (or was) a student of your school. I have applied to Dongguk University in Korea for 2022 academic year and I have agreed that Dongguk University can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Dongguk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Date : 2021 . _____ . _____

Applicant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Office of Admissions ,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 82-2-2260-8861

Fax : 82-2-2260-3696

E-mail : ipsi@dongguk.edu

Homepage : <http://ipsi.dongguk.edu>

외국학교 학력 및 성적조회 시 첨부할 지원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위 동의서의 ()안의 내용을 재학한 국가의 언어(영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재학한 학교의 수(초, 중, 고등학교 과정)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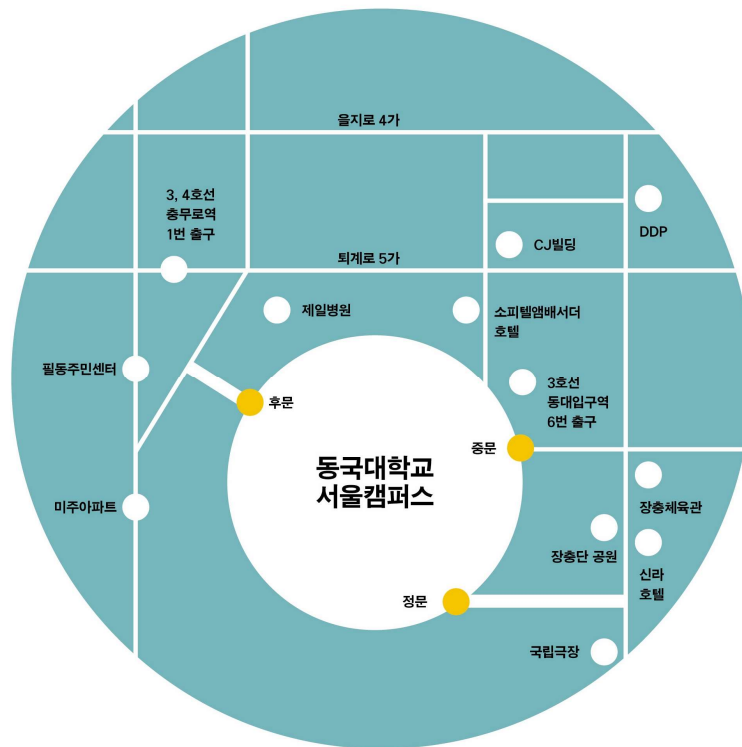
Certificate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성명 (Full name)) 홍길동 연락처 (Phone No.) 000-0000-0000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000000-0000000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종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종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번호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출입국 사실 확인용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동국대학교 전화번호 (Telephone no.) 02-2260-886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동국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홍길동 (서명 또는 인)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m ²) 또는 중질지(80 g/m ²)]				

※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 간선버스 : 144, 301, 407, 420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자가용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는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